

『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』

제4장 이용계약

제1조 (급여계약 등)

-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’ (이하 “계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-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.
 1. 계약 당사자
 2. 계약기간
 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 4.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-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정여부 등을 확인 한다.

제2조 (계약기간)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
-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
- ④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,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 (계약해지)

-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
-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1.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 2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 3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
 4.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 5. 이용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
 6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제4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권리)

-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2.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 3.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
 4.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5.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 6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7.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8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제5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의무)

1.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.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
5.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제5장 이용료**제1조 (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)**

-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.
-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.
- ③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 한다.
-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.

제2조 (이용료 변경 및 절차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1.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
2.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
3. 이용자의 건강상태,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

4. [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]에 고시한

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

5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.

1.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
2.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
3.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

제3조 (이용료 납부)

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.

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,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.

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
■ 주야간보호 일일 이용료 안내 (2025년 1월 1일 기준)

(단위 : 원)

2025년 월 이용료 한도액 - 한도액 초과시 본인부담금이 100% 추가됩니다.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024	2,069,900 원	1,869,600 원	1,455,800 원	1,341,800 원	1,151,600 원	643,700 원
2025	2,306,400 원	2,083,400 원	1,485,700 원	1,370,600 원	1,177,000 원	657,400 원
증가액	236,500 원	213,800 원	29,900 원	28,800 원	25,400 원	13,700 원

2025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(본인부담금은 일반 15% 기준입니다.)

등급		2024년 수가	2024년 본인부담금	2025년 수가	2025년 본인부담금
3시간미만	1등급	31,850 원	4,778 원	32,520 원	4,878 원
	2등급	29,480 원	4,422 원	30,100 원	4,515 원
	3등급	27,220 원	4,083 원	27,790 원	4,169 원
	4등급	25,980 원	3,897 원	26,530 원	3,980 원
	5등급	24,740 원	3,711 원	25,260 원	3,789 원
	인지지원등급	24,740 원	3,711 원	25,260 원	3,789 원
3시간이상 ~ 6시간미만	1등급	39,810 원	5,972 원	40,650 원	6,098 원
	2등급	36,850 원	5,528 원	37,630 원	5,645 원
	3등급	34,020 원	5,103 원	34,740 원	5,211 원
	4등급	32,470 원	4,871 원	33,160 원	4,974 원
	5등급	30,920 원	4,638 원	31,580 원	4,737 원
	인지지원등급	30,920 원	4,638 원	31,580 원	4,737 원
6시간이상 ~ 8시간미만	1등급	53,360 원	8,004 원	54,490 원	8,174 원
	2등급	49,420 원	7,413 원	50,470 원	7,571 원
	3등급	45,620 원	6,843 원	46,590 원	6,989 원
	4등급	44,070 원	6,611 원	45,000 원	6,750 원
	5등급	42,500 원	6,375 원	43,400 원	6,510 원
	인지지원등급	42,500 원	6,375 원	43,400 원	6,510 원
8시간이상 ~ 10시간미만	1등급	66,360 원	9,954 원	67,770 원	10,166 원
	2등급	61,480 원	9,222 원	62,780 원	9,417 원
	3등급	56,760 원	8,514 원	57,960 원	8,694 원
	4등급	55,210 원	8,282 원	56,380 원	8,457 원
	5등급	53,640 원	8,046 원	54,780 원	8,217 원
	인지지원등급	53,640 원	8,046 원	54,780 원	8,217 원

10시간이상 ~ 13시간이하	1등급	73,110 원	10,967 원	74,660 원	11,199 원
	2등급	67,720 원	10,158 원	69,160 원	10,374 원
	3등급	62,570 원	9,386 원	63,900 원	9,585 원
	4등급	61,000 원	9,150 원	62,290 원	9,344 원
	5등급	59,450 원	8,918 원	60,710 원	9,107 원
	인지지원등급	53,640 원	8,046 원	54,780 원	8,217 원
13시간초과	1등급	78,400 원	11,760 원	80,060 원	12,009 원
	2등급	72,630 원	10,895 원	74,170 원	11,126 원
	3등급	67,100 원	10,065 원	68,520 원	10,278 원
	4등급	65,540 원	9,831 원	66,930 원	10,040 원
	5등급	63,990 원	9,599 원	65,350 원	9,803 원
	인지지원등급	53,640 원	8,046 원	54,780 원	8,217 원
가족휴가 12시간 미만	1등급	53,640 원	8,046 원	54,780 원	8,217 원
	2등급	53,640 원	8,046 원	54,780 원	8,217 원
	3등급	53,640 원	8,046 원	54,780 원	8,217 원
	4등급	53,640 원	8,046 원	54,780 원	8,217 원
	5등급	53,640 원	8,046 원	54,780 원	8,217 원
	인지지원등급	53,640 원	8,046 원	54,780 원	8,217 원
가족휴가 12시간 이상	1등급	53,640 원	8,046 원	54,780 원	8,217 원
	2등급	53,640 원	8,046 원	54,780 원	8,217 원
	3등급	53,640 원	8,046 원	54,780 원	8,217 원
	4등급	53,640 원	8,046 원	54,780 원	8,217 원
	5등급	53,640 원	8,046 원	54,780 원	8,217 원
	인지지원등급	53,640 원	8,046 원	54,780 원	8,217 원

비급여 항목 비용

(단위 : 원)

식사 재료비	아침 : 2,500 원 점심 : 2,500 원 저녁 : 2,500 원 * (1식) 기준으로 계산
간식비	1,000 원 (1일/2회)
이 미용비	-